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29
----------	-----

2019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김호진 의원(찬성자 10명)
- 나. 발의일자 : 2019년 8월 6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라. 상정결과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9월 3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호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문화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의 선두이자 대한민국 문화수도로서 서울을 가꾸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문화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문화 융성을 위한 첨단으로서 지역출판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을 추진함.

나. 주요내용

- (1) 시장이 지역출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2) 지역출판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심의 위원회를 두어 진흥계획, 정책 등을 심의함(안 제5조~제6조)
- (3) 시장이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 (2)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 (3) 기 타: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조례안 제정 추진경위

- 동 조례안은 온라인 도서 산업의 성장, 다양한 여가콘텐츠의 증가에 따른 독서시간 감소 등에 따라 침체된 출판업계의 성장을 도모하고, 특히 지역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8월 6일 우리 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이 발의하였음.

〈2017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발표 : 2018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6천명, 학생(초등학교 4학년생~고등학생) 3천여명

조사내용 : 2017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를 제외한 종이책

조사결과 : 독서율 - 성인 59.9%(2015년 65.3%), 학생 91.7%(2015년 94.9%)

독서량 - 성인 8.3권(2015년 9.1권)

〈2017년 한국출판연감통계〉 (사)대한출판문화협회

구분	신간발행총수			신간발행부수		
	2016년	2017년	증감률(%)	2016년	2017년	증감률(%)
계	60,864	59,724	-1.9	81,711,463	76,495,364	-6.4

- 지역출판은 지역콘텐츠 생산을 통해 지역문화의 다양성 확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최근에는 지역문화의 미래 경쟁력

원천으로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¹⁾이며, 지자체에서 이를 조례로 규정한 사례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임.

그러나 지역출판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과 성과를 보인 사례는 현재로써 전무한 상황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연간 8천5백만원의 재원으로 출판 콘텐츠 창작(작가), 출판 제작(출판사), 출판 유통(서점 및 책거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출판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나 동 사업 외 지역출판을 위한 사업은 전무하고, 관련법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무에도 지역출판 관련 사업이 정확히 명기되지 않아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5.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6.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9.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제18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8.12) 『지역출판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방안연구』

한편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생활문화 시대’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공약으로 삼고 “지역서점 및 스토리텔러 양성 등 출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세부추진 과제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도 지역출판과 관련된 조항을 일부 추가하고 관련 사업을 키워 나갈 예정이다.

그러므로 지역출판과 관련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서울특별시의 지역문화 다양성 확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그 취지가 인정되며, 국가의 사업확장 시기와 더불어 제정 시기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현재 40,552개의 출판사가 운영 중이며, 개수별로 2위인 경기도(13,221개)와 현저한 차이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출판사 통계(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인쇄사 검색시스템, '19.8)

순위	지 역	출판사수	점유율(%)	비고
1	서울특별시	40,552	57.7	수도권 점유율 79.1%
2	경기도	13,221	18.8	
3	인천광역시	1,835	2.6	
4	대구광역시	1,806	2.6	
5	제주특별자치도	582	0.8	
총 계		70,260	100.0	

이 때문에 지역출판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물량과 가격경쟁면에서 수도권의 비교우위를 감당하지 못해 지역문화창출 산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으로 조례를 제정한 바 서울특별시의 지역출판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²⁾.

- 또한 동 조례안의 담당으로 지정된 서울도서관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사업의 내용을 분장하고 있는데, 출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11조(하부조직)** ① 서울도서관에 지식문화과, 도서관정책과, 정보서비스과를 둔다.
- ② 지식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 및 정보서비스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지식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 인사, 회계, 직원교육 등 도서관 운영 총괄
 2. 도서관 시설, 장비, 재산관리
 3. 서울도서관 분관, 지역도서관 등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5. 책 보물섬 조성, 관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총괄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진흥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관련 위원회 운영

2) 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출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또한 사업대상에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있음.(붙임 참고)

4. 도서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교육청 도서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서교육에 대한 사항
- ⑤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수집·납본·보존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DB구축 등 정리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이용 및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기획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시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은 서울인쇄센터 운영지원, 마포 디자인·출판지원센터 운영지원, 중구(인쇄) 스마트앵커 사업 지원 등 지역출판과 관련된 사업을 ‘소상공인 제조업’으로 인지하고 추진 중에 있음.

서울도서관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역서점 지원사업 실시, 서울특별시 지역서점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 지역서점위원회에 출판과 관련된 인원이 참가하여 지역출판과 관련된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하나 지역출판 활성화가 주된 목적은 아니며,

출판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의해 “제조업(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과 “정보통신업(58, 출판업)”으로 분류되는 등 독서문화 진흥을 목표로 삼고 있는 서울도서관이 담당하기에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조례안을 서울도서관에서 소관을 맡을 경우 출판→서점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총괄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지역출판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충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한편 서울시 문화본부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조례안 조문별 검토(총 10개 조문)

- 동 조례안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 총칙 규정에 해당하는 조문 3개,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지역출판 지원 범위 등 세부적인 본칙규정 5개 등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음.
- 안 제1조(목적)는 동 조례안의 목적을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출판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는 “출판”과 “지역출판”의 정의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조(신고)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안 제3조(적용범위)는 동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각 관계법령에 따른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정기간행물 및 신문·인터넷신문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서도 이들 매체를 출판 매체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임. 다만 상기 법 제3조제4호에서는 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출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은 이를 제외하였음.
- 안 제4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는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등)는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동 조례안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18.9)에서 분류하는 ‘자문기관’으로 의결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위원회임.

또한 동 조례안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18.9)에는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의 사무 및 정책을 결정하는 동 조례안의 위원회 성격 상 해당 사무의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가하는 것이 정책 결정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됨.

안 제5조제8항의 경우 간사로 ‘문화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동 조례안의 위원회는 지역출판과 관련된 사항 및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이므로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과장 이상의공무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해촉,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수당 등 위원회 설치 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은 상기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안 제5조의 수정제안

제 정 안	수 정 제 안
<p>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등)</p> <p>①~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u>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⑤~⑦ (생략)</p> <p>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문화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u></p> <p><u><신 설></u></p>	<p>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등)</p> <p>①~③ (제정안과 같음)</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u>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1. <u>지역출판 업무 담당 과장 이상의 공무원</u></p> <p>2. <u>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3. <u>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u></p> <p>⑤~⑦ (제정안과 같음)</p> <p>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u></p> <p>⑨ <u>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u></p>

- 안 제8조(지역출판 지원 등)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 결론으로 지역출판의 진흥을 통해 지역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동 조례안의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소관 실국 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가하는 등 변경사항을 명시함.
-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규정 중 동 조례안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지역출판심의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5조제1항)
-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함(안 제5조제4항)

-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8항)
-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9항)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29
----------	-----------

2019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가하는 등 변경사항을 명시함.
-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규정 중 동 조례안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

2. 수정 주요골자

- 지역출판심의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5조제1항)
-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함(안 제5조제4항)
-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8항)
-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9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과장 이상의 공무원
2.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같은 조 제8항 중 “문화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를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등)</p> <p>①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③ (생략)</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u>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⑤~⑦ (생략)</p> <p>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문화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u></p> <p>〈신설〉</p>	<p>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등)</p> <p>①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둘 수 있다.</u></p> <p>②~③ (제정안과 같음)</p> <p>④ 위원회의 위원은 <u>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1. <u>지역출판 업무 담당 과장 이상의 공무원</u></p> <p>2. <u>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3. <u>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u></p> <p>⑤~⑦ (제정안과 같음)</p> <p>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u></p> <p>⑨ <u>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u></p>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제4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추진체계
3.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주요시책
4. 지역출판 진흥정책 추진과 관련한 자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과장 이상의 공무원
2.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

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3. 지역출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역출판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사업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지원 사업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사업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관련 사업
 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지원 사업
 6. 서울특별시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 및 배포 사업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마케팅, 우수 출판물 배포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업
 8.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지역출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